파주시 공고 제2026 - 464호

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무인교통단장비(CCTV)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11월 19일

파 주 시 장

1. **목 적**: 무인교통단속장비 1개소 이전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

2. **예고방법**: 파주시청 홈페이지 (www.paju.go.kr)

3. **예고기간**: 2026. 11. 19. ~ 2026. 11. 28. (10일간)_[긴급]

4. **관련근거**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○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○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의 2(관계기관의 의견청취) ②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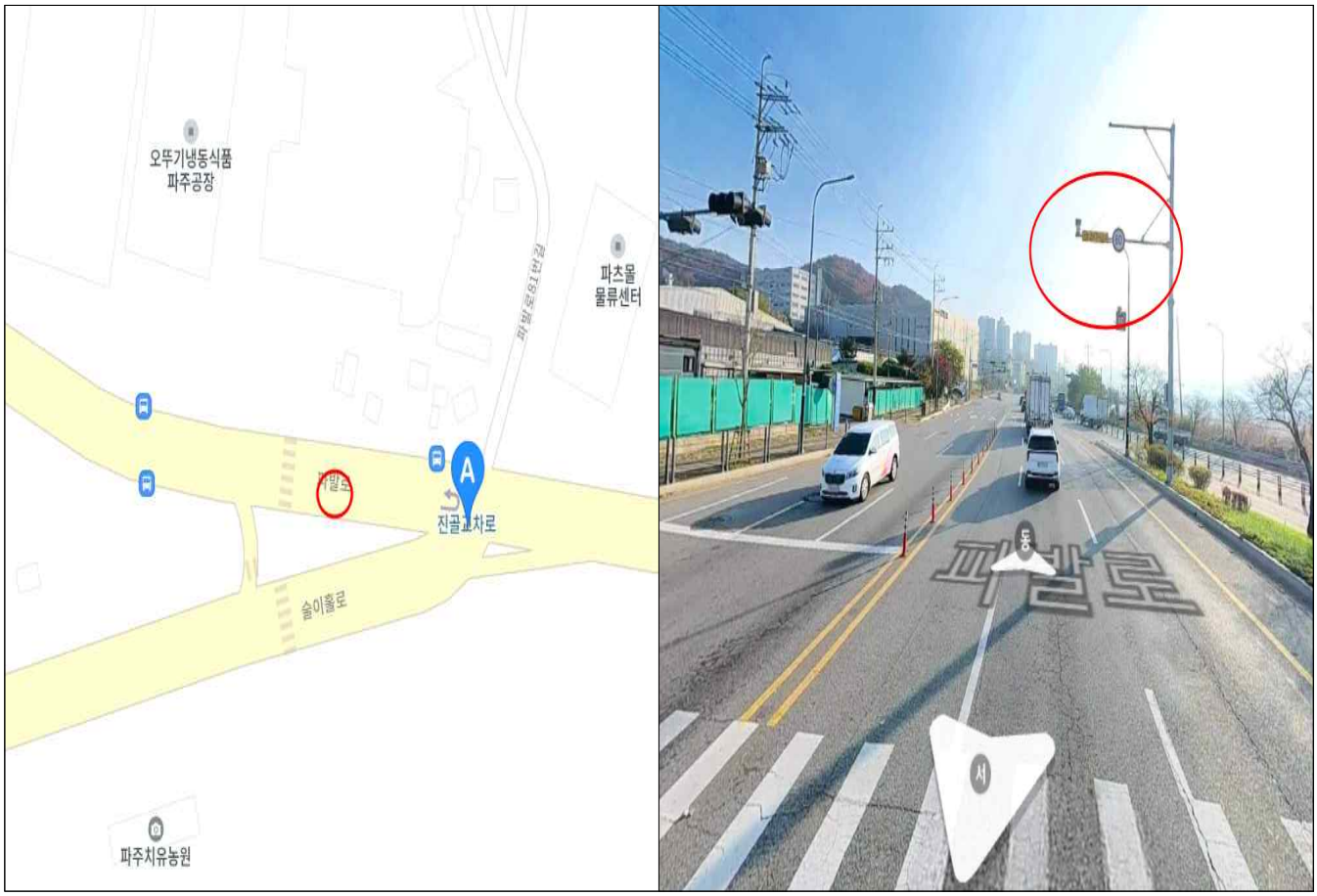
5. 설치 현황

□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(진골교차로 → 세경고 정문 앞 건너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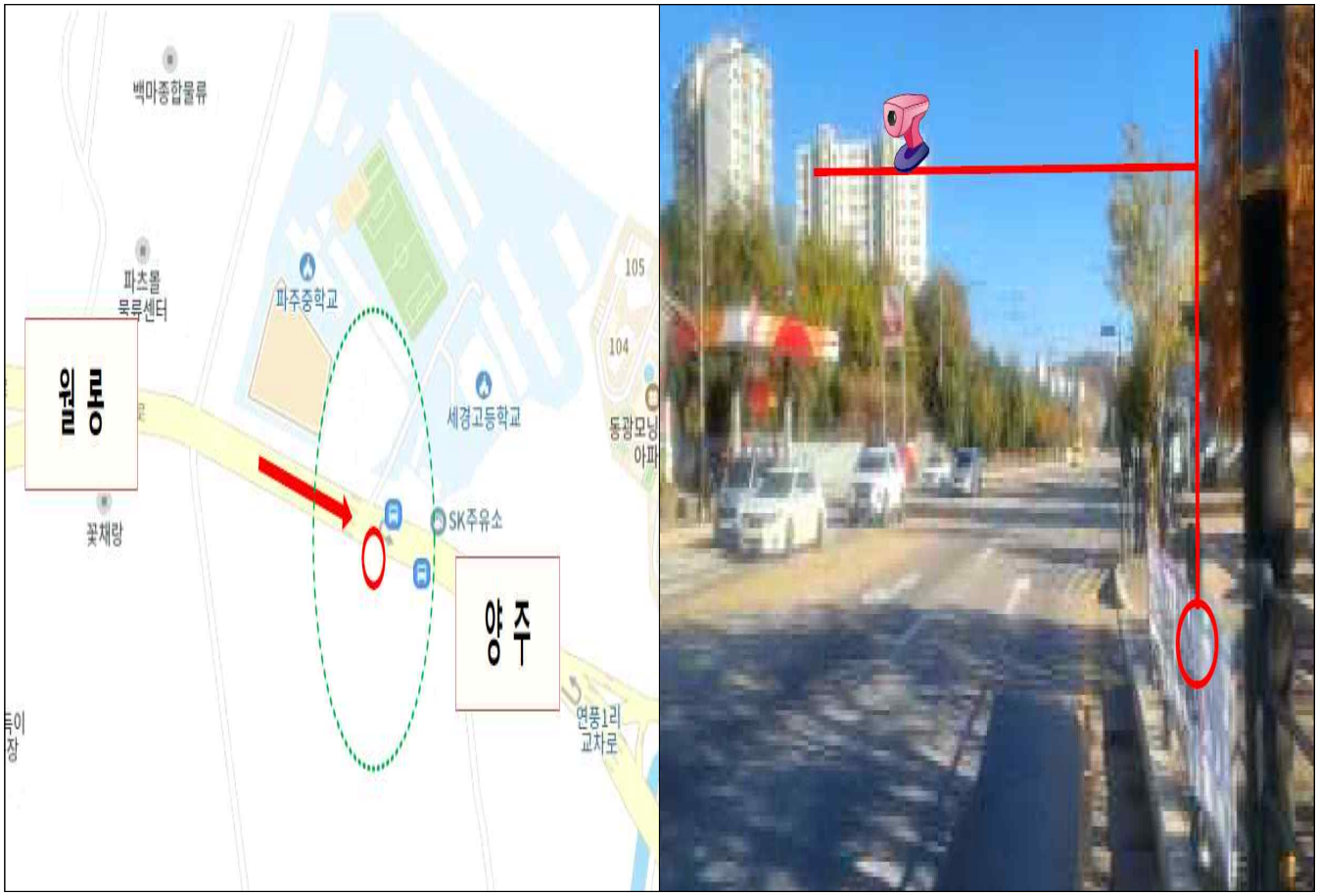
구분	위 치(방향)	시설구분	정상운영 시작일	단속방식	비고
기존	파주리 67 (파주 → 양주)	지점 단속 (신호, 과속) 1	'22.3.30.	전면	진골교차로
변경 (이설)	연풍리 460-1 (파주 → 양주)	지점 단속 (신호, 과속) 1	-	전면	세경고 정문앞 건너편

□ 위치도 및 현장 사진

□ 기 운영 무인교통단속장비(위치도 및 사진)_진골 교차로



□ 이전설치 대상지(위치도)_세경고 정문 앞 건너편

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[붙임2]를 파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☎ 031-940-5769)

다. 제출장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 교통정책과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파주시청 교통정책과(☎ 031-940-5791)

마.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사 업 명	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설치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: (서명 또는 인)

파주시장 또는 파주경찰서장 귀하